

研究論文

高麗 內侍制의 成立*

김재명**

| | |
|-------------------|---------|
| I. 머리말 | IV. 맺음말 |
| II. 國初의 內廷官制와 內侍制 | <참고문헌> |
| III. 高麗式 內侍制로의 變化 | <국문요약> |

I. 머리말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高麗의 內侍는 中國의 唐·宋이나 朝鮮의 그것과는 實體가 전혀 달랐다. 後者가 宦官內侍임에 반해 前者는 주로 文武官 出身의 朝官內侍였다.¹⁾ 이들이 宮中の 雜事보다는 奉命使臣·奏事·使行 및 執禮와 같이 비중 있

* 이 논문은 2004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연구됨.

**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국사교육과 부교수, 한국중세사 전공(kimjm@wonkwang.ac.kr).

1) 高麗의 內侍와 關係해서는 다음의 글들이 참고된다. 姜愛子, 「高麗時代의 內侍에 對하여」, 梨花女大碩士學位論文(1965); 朴孝信, 「高麗時代의 內侍」, 『駿台史學』, 19(1966); 金昌洙, 「麗代 內侍의 身分」, 『東國史學』, 11(1969); 周藤吉之, 「高麗初期의 內侍·茶房と明宗朝以後의 武臣政權との關係」, 『東方學』, 55(1977); 朴漢男, 「高麗內侍에 關한 研究」, 成均館大碩士學位論文(1982); 朴漢男, 「高麗內侍와 門閥貴族의 形成關係」, 『首善論集』, 8(1984); 崔震植, 「高麗前期 內侍와 王權과의 關係」, 『東義史學』, 4(1988); 金洛珍, 「牽龍軍과 武臣亂」, 『高麗武人政權研究』(서강대출판부, 1995); 최규성, 「고려 남반직의 성격 변화에 대한 연구」, 『史學研究』, 58·59 合(1999); 金載名, 「高麗 前·中期의 財政運營과 內侍」, 『歷史와 社會』, 24(국제문화학회, 2000); 金載名, 「高麗時代의 內侍」, 『歷史教育』, 81(2002a); 金載名, 「高麗時代의 朝官內侍」, 『정신문화연구』, 25 권 3 號(2002b); 矢木毅, 「高麗時代의 內侍と內僚」, 『朝鮮學報』, 184(2002); 김보광, 「高麗前期 內侍의 構成과 役割」, 『한국사학보』,

는 업무에 종사할 뿐 아니라 개별 內侍마다 職銜에 따르는 고유한 직무까지 수행했던 것²⁾도 이런 사실과 관련이 깊다. 高麗에서 宮中の 雜事는 內侍가 아니라 이른바 宦官給事로 불리는 부류의 몫이었다.³⁾

이처럼 文武官 出身의 內侍는 高麗 때만 있었던 아주 특징적인 존재였다. 그런데 현재 적지 않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만이 구명되었을 뿐 그렇게 된 배경이나 과정 등과 같이 정작 우리가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접근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다. 짚막하게 ‘宦官 弊害의 防止를 거론한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⁴⁾ 論證을 缺如하고 있을 뿐 아니라, 宦官內侍를 두었던 朝鮮時代에도 별다른 宦官의 弊害는 없었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高麗가 中國 및 朝鮮과는 아주 다른 특징적인 內侍制를 시행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과정을 밝히는 일은 高麗 內侍制의 충실한 이해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宿題의 하나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겠다.

이에 本稿에서는 그간 관련 資料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麗初의 內侍制에 주목하고자 한다. 아무래도 高麗의 內侍制가 성립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을 고찰해야만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王 및 王室의 업무를 전담하는 內廷官制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의 實體가 곧 麗初의 內侍라는 점을 밝히는 데 論議의 焦點을 맞추려고 한다. 그리고 이어 成宗 연간에 진행된 일련의 官制 整備, 특히 그 14년의 官制 改編으로 그간의 內廷官制가 朝廷官制로 변모하면서 高麗式 朝官內侍制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살펴 볼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미리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은 本稿에서 다룬 麗初의 內廷官制와 그 變化에 대한 論議는 매우 制限的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글은 어디까지나 高麗式 內侍制의 등장 배경과 과정을 밝히기 위한 것일 뿐, 麗初의 官制 全般에 대한 究明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유념했으면 한다. 다만, 관련 資料가 극히 零星하여 무리한 推測과 臆斷으로 論旨를 전개한 부분이 적지 않음을 미리 고백하

13(2002); 金載名, 「高麗 內侍制 運營의 一面」, 『清溪史學』, 18(2003a); 金載名 「高麗의 執奏制」, 『史學研究』, 72(2003b); 金載名, 「高麗後期 內侍制의 變化」, 『정신문화연구』, 26 권 4 호(2003c).

2) 金載名, 앞의 논문(2002b).

3) 『高麗史節要』 仁宗 12년 5월 10:12b(1:257).

4) 周藤吉之, 앞의 논문

며, 이에 대한 先學들의 叱正을 바란다.

II. 國初의 內廷官制와 內侍制

『高麗史』뿐만 아니라 墓誌銘을 비롯한 각종의 金石文에는 高麗의 內侍에 관한 자료가 꽤 많이 보인다. 그러나 이의 대부분은 文宗代 이후의 것들이고 그 이전의 자료는 별로 없다. 그간 麗初, 즉 成立期의 內侍制에 대한 이해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실은 이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內侍의 用例를 직접 싣고 있는 다음 두 資料의 가치는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고 하겠다.

A-㉠ 守義刑臺卿인 能律을 廣評侍郞으로 삼고 廣評侍郞인 職預를 內侍書記로 삼았다.⁵⁾

A-㉡ 景宗이 죽은 후 王妃가 자기 집에 나와 거처하였는데, 郁이 드디어 情을 통하여 王妃가 임신하게 되었다. 일이 발각되자 成宗은 郁을 泗水縣으로 流配시키며…內侍謁者 高玄에게 명하여 押送케 하였다.⁶⁾

A-㉠은 太祖 卽位 직후에 職預란 인물을 內侍書記로 임명한 人事 기록이고, ㉡은 內侍謁者 高玄을 시켜 宗室 王郁을 泗水縣으로 流配토록 한 成宗 11년의 기사인데,⁷⁾ 職名이 다른 書記와 謁者를 모두 內侍로 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여기서 書記의 실체는 잘 알 수 없지만, 謁者는 掖庭院 소속의 內謁者監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⁸⁾ 따라서 일견 內侍를 掖庭院의 관직 또는 관원으로 보고, 나아가 掖庭院을 麗初의 內侍機構로 이해할 수도 있다.⁹⁾

5) 『高麗史』世家 太祖 원년 10월 庚申 1:14b(1:40).

6) 『高麗史』列傳(3) 宗室(1) 太祖 安宗 郁 90:2b(3:37).

7) 世家에는 이를 成宗 11년 7월의 일로 기술하고 있다 『高麗史』世家 成宗 11년 7월 壬辰.

8) 王郁을 泗水로 압송했던 高玄이 이듬해 다시 內謁者監으로서 王郁의 아들인 顯宗을 生父에게 데려다 준 사실이 확인되는 바(朝鮮總督府(編), 『朝鮮金石總覽』上, 73 玄化寺碑 242쪽), A-㉡에 보이는 ‘內侍謁者’의 정확한 실체는 內侍內謁者監이었다고 판단된다. 이를 掖庭院의 또다른 관직인 從8品의 內謁者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姜愛子, 앞의 논문, 朴漢男, 앞의 논문(1982)), 불과 1년 사이에 正6품의 內謁者監으로 몇 단계를 뛰어 陞差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 비록 아직은 그 실체를 잘 알 수 없으나, A-㉠의 內侍書記를 최소한 掖庭院의 관원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廣評侍郎을 지낸 인물이 轉補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일단 內侍書記가 그에 준하는 관직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본다. 그런데 職名이 유사한 것은 고사하고, 太祖代에서 成宗代에 이르는 사이 혹 職名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位相 면에서 廣評省의 次官職에 비견되는 관직을 掖庭院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이다. 후일 文宗 때 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掖庭院의 最高職이 正6品の 內謁者監이었음을¹⁰⁾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麗初의 內侍를 掖庭院 관원에 대한 汎稱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의 실제 규명은 여전한 宿題로 남아 있다고 하겠다.

다음에 소개하는 韋壽餘의 사례도 이같은 筆者의 생각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光宗 때부터 오랫동안 尙膳院의 司膳으로 있었다고 하는 韋壽餘(A-㉡)를

A-㉡ 荀質과 甲質을 左右執政으로 삼아 모두 內史令을 겸하게 하고, 元甫 壽餘를 近臣으로 삼아 御廚의 일을 맡아 보게 하였다.¹¹⁾

는 데서 보듯이 近臣으로 표기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近臣은 內侍인 것으로 파악된다.¹²⁾

그러면 이처럼 麗初에 아직 그 소속을 알 수 없는 書記, 掖庭院의 內謁者監, 尙膳院의 司膳을 공통적으로 지칭하던 內侍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바로 다음 資料인데, 文中에 보이는 雜業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그 일단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A-㉢ 景宗 元年 11월에 職散官 各品の 田柴料를 처음으로 정하니, 官品の 高

9) 姜愛子, 위의 논문; 朴漢男, 위의 논문

10) 『高麗史』 志(31) 百官(2) 掖庭局 77:15ab(2:687).

11) 『高麗史』 世家 景宗 원년 11월 2:33ab(1:64).

12) 물론 近臣이라 하여 모두 內侍로 간주할 수는 없다. 內侍 외에도 宰樞·承宣·郎舍 등의 兩府 관원이 近臣으로 불린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金載名, 앞의 논문(2002a)). 하지만 韋壽餘가 맡은 일이 후일 兩府 관원의 職務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近臣의 실체는 內侍로 보아 좋을 것이다.

低는 논하지 않고 단지 人品으로써 이를 정하였다. 紫衫 이상은 18품으로 나누고, 文班의 丹衫 이상은 10품, 緋衫은 8품, 綠衫 이상은 10품으로 나누었다. 殿中·司天·延壽·尙膳院等 雜業의 丹衫 이상은 10품, 緋衫 이상은 8품, 綠衫 이상은 10품으로 나누었으며 武班의 丹衫 이상은 5품으로 나누었다. 그 이하의 雜吏도 人品으로써 정했는데 지금한 것이 동일하지는 않았으며, 이 해의 科等に 미치지 못한 자에게는 한결 같이 田 15結을 지급하였다.¹³⁾

그 유명한 始定田柴科 규정인데, 지급대상으로 거론한 殿中·司天·延壽·尙膳院 등을 雜業으로 분류한 점이 꽤 흥미롭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18품으로 구분된 紫衫層과 丹衫·緋衫·綠衫으로 다시 세분되는 文班·武班 및 雜業은 그 실체가 전혀 달랐던 것으로 이해된다. 前者가 주로 高麗의 建國 과정에서 功을 세운 地方의 豪族이었다면, 後者는 다양한 통로로 官職 세계에 발을 디딘 官僚層이었다는 것이다.¹⁴⁾ 결국 이 무렵의 官僚層은 文班·武班·雜業의 세 부류로 대별되었다고 하겠는 바, 이같은 사실은 麗初의 官制를 새롭게 천착할 수 있는 좋은 실마리를 던져 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고 본다.

그러면 이렇게 文·武班과 구별되는, 그렇다고 雜吏도 아닌 雜業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이를 技術 계통의 관직으로 파악하고자 한 견해¹⁵⁾가 있었으나, 적극적인 논증 없이 막연한 추측에 의지한 해석이어서 설득력이 약하다. 天文을 관장한 司天이나 醫藥 관계의 일을 맡았을 延壽의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殿中省의 관직을 과연 技術職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科擧制의 한 분야였던 ‘雜業’을 염두에 둔 偏見의 소산이 아니었을까 한다. 아무래도 다른 측면에서 살펴 보아야 할 듯한데 筆者의 판단으로는 이들 관서 모두 內廷官署였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여러 관서 가운데 殿中省이 筆頭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첫 번째 端初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공교롭게도 이점은 총 115 개의 官府로 짜여진 統一

13) 『高麗史』 志(32) 食貨(1) 田制 田柴科 78:6b-8b(2:707-8).

14) 이점에 대해서는 金載名, 「전시과 제도」, 『한국사』, 14(國史編纂委員會 1993), 38~39 쪽에 잘 정리되어 있다.

15) 姜晉哲, 『高麗土地制度史研究』(高麗大出版部, 1981), 37 쪽

新羅의 內廷官制 중에서 그 頂點에 있던 內省¹⁶⁾을 제일 먼저 적시한 『三國史記』의 기술¹⁷⁾과 맥락을 같이하는 바, 결코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다. 新羅의 內省이 한때 殿中省으로 개칭된 적이 있었던 만큼 麗初 어느 때가 그런 內省이 다시 殿中省으로 바뀌어 內廷官署의 으뜸으로 자리했을 가능성은 아주 크며, 이런 사정이 始定田柴科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닐까 한다.

뿐만 아니라, 機能 면에서 麗初의 司天·延壽·尙膳院에 각각 비견되는 新羅 때의 官府가 일반 朝廷官署에는 없는 반면 內省 이하의 內廷官制 중에는 보인다는 사실도 이같은 이해에 도움을 준다. 供奉卜師·供奉醫師·肉典¹⁸⁾ 등이 바로 그것인 바, 이 또한 麗初 어느 때가 각각 司天·延壽·尙膳院으로 개편, 개칭되었다고 생각한다. 곧 소개될 司天供奉과 尙醫供奉의 존재를 통해 供奉卜師와 司天, 供奉醫師와 延壽(尙醫)의 관련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肉典과 尙膳院의 경우는 景德王 때 肉典이 일시 尙膳局으로 개칭된 사실¹⁹⁾이 참고된다.

또한 各 品別로 규정한 文班과 雜業의 科等 區分 및 額數가 똑같았다는 것²⁰⁾도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한다. 이는 곧 兩者의 官僚의 地位가 대등했다는 점과 함께 그럼에도 兩者 사이에는 둘을 하나로 묶지 않고 굳이 나누어야 할 어떤 性格的 差異가 있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官僚的 位相은 文班과 對等하면서도 그 性格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존재가 바로 雜業인 바, 그간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內廷官制의 官職을 제외하고는 마땅히 다른 대상을 찾기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筆者의 論旨는 雜業으로 분류되는 네 官署²¹⁾ 및 그 官員의 실제 업무가 한결같이 王 또는 王室과 관계되는 것이었다는 점²²⁾에서 한층 더 보강된다. 가령

16) 三池賢一, 「新羅內廷官制考」, 『朝鮮學報』 61·62(1971, 1972). 三池氏의 주장에 따르면 新羅의 內省은 115개의 內廷官署를 통할하며 王室事務를 총괄하던 으뜸 官司였다고 한다.

17) 『三國史記』 雜志(8) 職官(中) 內省

18) 『三國史記』 雜志(8) 職官(中) 供奉醫師·供奉卜師·肉典

19) 위와 같음.

20) A.㉔의 인용에서는 생략하였지만 각 품별 支給額數를 기술한 細註를 보면 文班과 雜業의 科等區分 및 額數는 완전히 같았다.

21) 이러한 內廷官署의 官職을 왜 ‘雜業’으로 지칭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다만, 光宗 때 徐弼이 有功者和 無功者를 논하는 과정에서 朝廷官員인 式會를 두둔하고 內廷官署의 官員으로 이해되는 國王 側近의 近臣을 힐난한 사실(『高麗史』 列傳(6) 徐弼)을 감안할 때 景宗 卽位 직후의 反動的 霧圍氣 속에서 後者 集團에 대한 前者의 輕蔑의 認識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정도로 추정해 볼 수는 있겠다.

殿中(省)의 경우,

A-㉑ …말을 마치자 그대로 앉아 돌아가시니, 享年 79 세이고 法臘은 60 년이 다. 임금이 訃音을 듣고 哀悼하며 寢殿에서 哭을 하였다 그리고는 左僧維 大德 淡猷와 元尹 守殿中監 韓潤弼 등을 사신으로 보내어 글과 □ □으로 弔意를 표하고, 穀食과 香을 賻儀하였다.²³⁾

에서 보듯이 光宗 16年 守殿中監 韓潤弼이 왕의 명에 따라 靜眞大師의 喪에 弔喪하고 賻儀를 전했는 바, 이는 近侍로서 王命을 직접 받아 奉行하는 中使로서의 활동인 것이다. 그런가 하면 尙膳院의 경우는,

A-㉒ 韋壽餘는 沁州 江華縣 사람으로 단정하고 진실하며 법을 잘 지켰다. 光宗 때부터 司膳으로 있었으나 오랫동안 자리를 옮기지 못하더니, 穆宗 때 여러 번 陞遷하여 門下侍郎平章事가 되었다.²⁴⁾

고 하는 韋壽餘의 사례가 보이는데, 여기서의 司膳은 始定田柴科 규정(A-㉑)에 나오는 尙膳院의 한 관직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 때의 일을 또다른 史料(A-㉒)에서는 ‘近臣으로 삼아 御膳의 일을 맡겼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곧 光宗 연간에 尙膳院이 闕內에서 御膳을 관장하던 內廷官署의 하나였음을 알려 주는 것이라 하겠다. 司天臺의 경우는 좀더 흥미로운 資料가 보이는 바

A-㉓ 崔知夢은 初名이 聰進이니…나이 18 세에 太祖가 그 명성을 듣고 불려서 꿈을 점치게 하자 吉兆를 얻고는 “반드시 三韓을 統率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太祖가 기뻐하여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게 하고 비단 옷과 供奉의 관직을 하사하면서 항상 征伐에 나설 때마다 隨從케 하여 左右에서

22) 論點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金甲童과 이정훈 또한 이점에 주목한 바 있다. 특히 이정훈은 이들 官署의 설치를 ‘공식적인 近侍機構를 통해 강화된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金甲童, 『羅末麗初의 豪族과 社會變動 研究』(高麗大民族文化研究所 1990); 이정훈 「高麗前期各司의 설치와 운영방식의 변화」, 『韓國史研究』, 128(2005) 참조.

23) 『朝鮮金石總覽』 上, 62 鳳巖寺靜眞大師圓悟塔碑, 205쪽.

24) 『高麗史』 列傳(7) 韋壽餘 94:38b(3:114).

떠나지 않도록 하였으며, 統合 이후에는 禁中에서 왕을 모시며 顧問에 대비토록 하였다. 惠宗 2년에 王規가 왕의 아우들을 謀害하려 하자 崔知夢이 이 때 司天官으로 있으면서 上奏하여 말하기를, “...”라 하였다.²⁵⁾

고 하는 崔知夢의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崔知夢이 맡았다고 하는 太祖 때의 供奉이나 惠宗 때의 司天官 모두 구체적으로는 司天供奉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²⁶⁾ 평시는 물론이고 戰場에서까지 왕을 지근거리에서 隨從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최소한 麗初에는 司天臺가 闕內에서 天文을 관장하던 內廷官署였으며, 그 관직으로서의 供奉은 항시 왕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近侍의 일원이었음을 알려 주기 때문이다.

한편 醫藥 관계의 일을 담당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延壽(院)의 경우는 다음의 資料가 있어 참고된다.

A-◎ 大王(光宗)이 尙醫供奉侍郎 直文에게 명하여 특별히 仙藥을 가지고 가서 朝夕으로 보살피게 하였다. 大師가 말하기를, “老僧의 병에는 聖藥이 없으니, 청컨대 侍郎은 大闕로 돌아가 王이나 잘 모실 것이지 어찌 해서 老僧을 위해 山寺에 오래 머무시는가”라고 하였다.²⁷⁾

延壽의 用例를 직접 싣고 있지는 않지만, 어의상으로 보건대 文中에 나오는 尙醫(院)는 어떤 형태로든 延壽(院)와 관련이 깊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마도 資料에 보이는 尙醫(院)가 얼마 후 延壽(院)로 개편되지 않았을까 하는데,²⁸⁾ 이를 통해 光宗 때까지만 해도 宮中에서 왕의 施療를 주된 임무로 하는 尙醫(院)供奉이란 벼

25) 『高麗史』 列傳(5) 崔知夢 92:12b-3a(3:72-3).

26) 『高麗史』 列傳(40) 叛逆(1) 王規 127:3b(3:757)에서는 惠宗 2년 당시 崔知夢의 관직을 ‘司天供奉’으로 기술하고 있다.

27) 『朝鮮金石總覽』 上, 66 普願寺法印國師寶乘塔碑, 230쪽.

28) 穆宗 때의 尙藥局이 恭愍王 5년에 尙醫局으로 개편된 적이 있다 하고(『高麗史』 志(31) 百官(2) 奉醫署), 또 成宗 初의 資料에서 尙藥直長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는 바(『高麗史』 世家 成宗 8년 2월), 이로 보건대 光宗 연간의 尙醫(院)가 景宗 때 延壽(院)로 바뀌었다가 成宗 初년에 다시 尙藥局으로 개편되었다고 생각된다.

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內省과 殿中省, 供奉卜師와 司天供奉, 供奉醫師와 尙醫(延壽)供奉, 肉典과 尙膳院의 경우에서 보듯이 新羅의 內廷官制와 유사하거나 그 맥을 잇는, 그러면서도 한결같이 王 또는 王室에 관계되는 업무를 처리하던 官職이 麗初에, 그것도 景宗 初의 始定田柴科 규정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깊다. 始定田柴科가 시행될 무렵에는 이미 新羅의 경우와 같이 殿中省을 정점으로 하고 그 산하에 기능적으로 분화된 다수의 官署를 두는 內廷官制가 마련되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²⁹⁾

그런데 이같은 殿中省이 이 무렵에 이르러 비로소 설치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에 대한 최초의 用例는 물론 光宗 16년 靜眞大師의 葬禮에 中使로 파견된 守殿中監 韓潤(ᄃᆞᆫA-ᄃᆞᆫ)의 사례이다. 그러나 비록 그 정확한 명칭은 알 수 없지만 이보다 앞선 太祖 연간에도 이미 殿中省 또는 이에 비견되는 內廷官署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A-ᄃᆞᆫ 尙州의 우두머리인 阿字蓋가 使節을 보내 歸順해오자 왕이 의례를 갖추어 맞이하도록 명하였다. 毬庭에서 의례를 연습하기 위해 文武官들이 다 나와 줄지어 섰는데, 廣評郎中 柳問律과 直省官 朱瑄(ᄃᆞᆫ)이 서는 자리의 순서를 다투었다.³⁰⁾

는 기사에 보이는 ‘直省官’의 존재가 주목된다. 얼핏 ‘直省’을 ‘官府로 보아‘直省의 官員’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며, ‘直’을 ‘直宿하다’는 動詞로 보고 ‘省에서 直宿하는

29) 물론 殿中省의 職務를 ‘族屬譜牒의 管掌’으로 설명한 百官志의 기술(『高麗史』志(30) 百官(1) 宗簿寺)을 근거로 이같은 이해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해석의 폭을 아무리 넓히더라도 王室의 譜牒을 관장하는 일과 內廷官署를 통할하는 것 사이의 관련성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百官志의 기술은 麗初가 아닌 後代, 적어도 穆宗 이후의 사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A-ᄃᆞᆫ의 始定田柴科 규정과 A-ᄃᆞᆫ에서 보듯이 殿中省의 존재는 이미 光宗 연간부터 확인된다. 그럼에도 이를 모를 리 없는 百官志 編者는 이의 沿革을 ‘穆宗 때 殿中省이 있었다’는 사실부터 記述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마도 穆宗代를 전후하여 이의 성격이 크게 달라졌는 바, 內廷官署를 두루 統轄하던 이전의 殿中省까지 ‘族屬譜牒의 관장’ 機構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30) 『高麗史』世家 太祖 원년 9월 甲午 1:14a(1:40).

官員'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좀 後代의 일이지만 武臣亂이 일어나던 날 殿中內給事 文克謙이 '直省中'에 變亂 소식을 듣고 도망해 숨었던 사례³¹⁾로 보건대 後者의 해석이 옳다고 본다. 여기서의 '直省'을 官府로 볼 수 없음을 물론이며 아무래도 '省에서 直宿하다'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한다. 아울러 당시 그가 殿中內給事였다는 점에서 直宿하던 官府로서의 '省'은 殿中省임이 분명하며 따라서 A-㉔에서의 '直省官' 또한 구체적으로는 '直宿을 주요 임무로 하던 殿中省의 官員'이란 의미로 일단 해석된다.³²⁾

그러나 이렇게 直省官이 소속된 太祖 때의 內廷官署를 과연 後代와 같이 殿中省이라 불렀는지는 의문이다. 卽位 직후 官制를 始定하며 '新羅의 제도를 따르겠다'고 천명한 太祖의 의지³³⁾를 고려하면 殿中省보다는 오히려 新羅 때의 이름인 內省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太祖 때만 해도 唐式 官名이 거의 쓰이지 않았다는 점도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한다. 가령 太祖 즉위 초의 人事案³⁴⁾에서 확인되는 12개의 官府 중 唐式 官名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겨우 兵部和 倉部 뿐인데, 이마저도 新羅 및 泰封 시절부터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형적인 唐式 官名인 殿中省이 太祖代 直省官의 소속 官府名이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면 太祖 때의 內省이 殿中省으로 바뀐 것은 언제쯤인가. 光宗 16년의 金石文(A-㉕)에서 그 최초의 用例가 보이는 만큼 그 이전일 것만은 분명한 바, 그렇다면 光宗 11년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본다. 주지하듯이 이 해에 光宗은 中國의 제도를 받아들여 百官의 四色公服制를 시행하는 한편³⁵⁾ 몇몇 官府에 대한 개편도 단행하였다. 가령 太祖 때부터 있었던 衙軍部를 軍部로 바꾸고, 內軍을 掌衛部로 고치는가 하면, 物藏省을 寶泉으로 개편하였던 것이다. 內省의 殿中省으로의 개편 또한 이같은 官制改革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31) 『高麗史節要』 毅宗 24년 8월 丙子 11:53a(1:305).

32) 廣評郎中 柳問律과 直省官 朱瑄劫이 儀禮 席上에서 자리다툼을 벌인 것도 실은 이러한 사실과 관련이 깊다. 즉 하나는 朝廷官職이고 다른 하나는 內廷官職이어서 兩者의 官職上의 高下라든가 先後가 분명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만일 똑같이 朝廷官職이었다면 官府 및 官職의 序列이 이미 정해져 있었을 터인 바, 이같은 葛藤은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33) 『高麗史節要』 太祖 원년 6월 1:9b(1:11).

34) 『高麗史』 世家 太祖 원년 6월 辛酉 1:9a-11a(1:38-9).

35) 申虎澈, 「高麗 光宗代의 公服制定」, 『高麗光宗研究』(一潮閣, 1981).

요컨대 建國 직후부터 內省을 수반으로 하여 다수의 內廷官署를 一元的으로 統轄하는 內廷官制가 朝廷官制와는 별도로 갖추어졌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아울러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앞서 의문으로 제기했던 麗初 內侍의 실체도 조금은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들 內廷官署와 麗初에 內侍로 불린 官職의 상호관련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景宗 때 近臣으로 불린 司膳의 소속 관부인 尙膳院은 물론이고, 內侍內謁者監이 소속된 成宗 11년의 掖庭院도 內廷官署의 일원이었을 것이라는 점³⁶⁾에서 麗初의 內侍와 內廷官署의 관련성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그 위상이 廣評省의 次官級으로 추정되는 A-㉠의 內侍書記 職預는 이들 內廷官署를 총괄하는 內省 소속의 관원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다음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麗初보다 그 位相과 權限이 크게 약화된 穆宗 이후에도 尙膳院이나 掖庭院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3~5品の 고위 관직이 설치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해는 앞서 소개한 바 있는 A-㉡의 자료에 의해 좀더 뒷받침된다고 본다. 光宗 16년 靜眞大師의 喪을 弔問하기 위해 파견된 殿中監 韓潤弼의 역할은 羅末 神德王 5년에 郎空大師가 涅槃했을 때 왕이 中使를 보내 葬禮를 監護토록 한 것³⁷⁾과 완전히 똑같다는 점에서 中使로서의 활동이라 하겠다. 그런데 睿宗 元年 門下侍中 魏繼廷이 乞退를 고집하자 이를 敦諭하기 위해 파견된 內侍 韓皦如³⁸⁾를 中使로도 표기하고 있음³⁹⁾을 볼 때 A-㉡에서의 殿中監 韓潤弼 또한 內侍였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나아가 이는 곧 內侍書記와 같은 高位職의 內侍가 있는 官署가 內省(殿中省)이었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이렇게 內侍書記를 內省의 書記, 御廚를 담당한 近臣(內侍)을 尙膳院의 司膳 그

36) 물론 掖庭院은 앞서 소개한 始定田柴科 규정(A-㉡)의 殿中省(內省) 산하 관서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記述된 내용을 자세히 보면 麗初의 雜業 官署가 殿中省을 비롯한 네 官署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殿中·司天·延壽·尙膳院 等’으로 표현되어 있는 바, 이들 官府 외에도 雜業으로 분류되는 內廷官署는 꽤 많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洒掃와 같은 宮中の 雜事를 주로 맡은 掖庭院 또한 마땅히 이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옳겠다.

37) 『朝鮮金石總覽』 上, 太子寺郎空大師白月栖雲塔碑, 185 쪽.

38) 『高麗史』 列傳(8) 魏繼廷 95:22b(3:128).

39) 『高麗史節要』 睿宗 원년 12월 및 史臣曰 7:18a-9a(1:189-90).

리고 內侍謁者를 掖庭院의 內謁者監으로 이해하고 보면 麗初의 內侍는 결국 그 공통분모라 할 內廷官署의 官員에 대한 汎稱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麗初의 內侍制는 內省을 정점으로 하는 內廷官制에 다름 아니며, 後代의 內侍院과 같은 內侍의 事務機構 또한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편 이들 麗初의 內侍, 즉 內廷官署의 官원은 專任職이었다고 이해된다 A-①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내용으로 보건대 職預는 廣評侍郎의 직함을 그대로 유지한 채 內侍書記로 발탁된 것이 아니다. 守義刑臺卿 能律이 廣評侍郎에 임명되면서 연쇄적으로 자리를 옮긴 인사였다. 이를테면 廣評侍郎에서는 해임되고 內侍書記를 새로 맡게 된 것이다. 이점은 後代의 內侍, 특히 朝官內侍가 朝廷의各司에서 闕內的 內侍院으로 파견된 派遣職으로서 原所屬 官府에서의 職銜을 그대로 內侍의 職名으로 띠었던 것⁴⁰⁾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內廷官署에 소속된 專任職이었지만 이들 內侍와 朝廷官署의 官員, 즉 朝官 사이의 人事交流는 꽤 활발했다. 앞서 소개한 A-①의 職預가 그 단적인 예인바, 교류에 별다른 장벽이나 차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麗初에 司天供奉을 지낸 崔知夢이 후일 內議丞을 거쳐 內史丞으로 陞差하고⁴¹⁾ 光宗 때 司膳으로 있던 韋壽餘가 門下侍中에까지 올랐던 것⁴²⁾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또한 始定田柴科에서 文班과 雜業의 科等 구분과 支給額數를 완전히 같게 한 것도 이런 사실과 관련이 깊다고 본다. 文班과 雜業, 즉 朝廷官職과 內廷官職 간의 원활한 人的 交流를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고 이해되는 것이다.

III. 高麗式 內侍制로의 變化

앞 장에서 소개한 成宗 11년의 內侍謁者 高玄의 사례(A-②) 이후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內侍의 用例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文宗대에 이르러서이다. ‘文宗 때는 유능한 자만을 內侍로 가려 뽑아 20여 명으로도 宮中の 일을 무난히

40) 金載名, 앞의 논문(2002a).

41) 『高麗史』 列傳(5) 崔知夢 92:12b-3b(3:72-3).

42) 『高麗史』 列傳(7) 韋壽餘 94:38b(3:114).

처리할 수 있었다'고 강조한 林完의 上疏⁴³⁾에서 20여 명의 內侍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가 하면, '內侍로서 大倉의 일을 관장했다'는 林槩⁴⁴⁾의 구체적인 실례도 확인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文宗 이후의 內侍와 앞서 살펴 본 麗初의 內侍는 그 實體가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우선 後者が 內廷官署의 관원으로 專任職이었음에 반해, 前者는 주로 朝廷의各司를 原所屬으로 하여 闕內로 파견된 朝官內侍였다고 이해되는 것이다.⁴⁵⁾ 이와 함께 이들 派遣職으로서의 內侍가 모여 일을 보는 事務機構가 따로 있었다는 것도 주목할만한 차이점이다. 文宗이 '名家子弟이며 博學多聞한 崔思諫를 內侍省으로 불러들여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는 內侍省⁴⁶⁾이 바로 그것인 바, 仁宗 4년 이후로는 內侍院으로 개칭되어 後期까지 존속한 것으로 이해된다.⁴⁷⁾

이러한 차이는 곧 成宗 말에서 文宗代에 이르는 사이에 高麗의 內侍制가 크게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렇게 內侍制의 변화를 가져온 계기 내지 배경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바로 成宗 14년에 있었던 官制改革이다.

周知의 사실이지만 高麗 王朝가 新羅와 泰封의 제도를 계승하여 성립된 麗初의 中央 官制를 새롭게 정비하기 시작한 것은 成宗代의 일이다. 우선 그 2년에 唐制를 모방한 3省6部 體制를 갖추더니, 10년에는 다시 宋制를 받아 들여 中樞院을 설치함으로써 中央政治制度의 새로운 골격을 성립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그 14년에 이르러 또다시 中央 官制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 작업에 나섰는 바, 그 내용은 『高麗史』 百官志에도 일부가 제시되어 있으니⁴⁸⁾ 穆宗 元年의 改定田柴科 규정에 보

43) 『高麗史節要』 仁宗 12년 5월 10:12b-3a(1:257-8).

44) 『高麗史』 列傳(10) 林槩 97:18b(3:166).

45) 金載名, 앞의 논문(2002a); 金載名, 앞의 논문(2002b).

46) 『高麗史』 列傳(9) 崔思諫 96:1a(3:136).

47) 金載名, 앞의 논문(2002a).

48) '成宗十四年改爲尙書吏部'와 같이 이 해의 개편 사실을 분명하게 적고 있는 22개 官司는 물론이고, 그 沿革을 '穆宗朝(時) 有將作監'과 같은 방식으로 서술하기 시작한 26개의 官司 및 官職 또한 成宗 14년의 개편 내용이라고 이해된다. 같은 해에 이루어진 개편 사실임에도 百官志 編者が 이렇게 달리 기술한 것은 아마도 관련 자료의 有無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즉 初期 沿革에 관한 자료가 남아 있던 官司는 前者와 같이 적을 수 있었겠으나, 그렇지 못한 官司의 경우는 改定田柴科 규정에서 비로소 그 최초의 존재를 확인하고는 後者と 같이 기술하고 만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⁴⁹⁾

그런데 이 때의 官制 改編이 단순히 官司나 官職의 명칭을 고치는 데 그친 것은 아닌 듯하다. 中央 官制의 기본적인 틀을 바꾼 구조적인 개혁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朝廷官制와 內廷官制로 二元化되어 있던 麗初의 中央 官制를 朝廷官制로 一元化시키는 개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그간 殿中省 內省의 統轄 하에 有機적으로 움직이던 餘他の 內廷官署가 각각 朝廷官署로 독립하고, 그에 따라 殿中省의 位相과 機能 또한 크게 약화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始定田柴科와는 다른 改定田柴科의 土地分給 규정에서 이의 端初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始定田柴科(A-㉔)에서는 科等の 구분과 액수가 완전히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文班과 雜業의 지급규정이 따로 설정되었고, 이것은 兩者의 실체가 각각 朝廷官署와 內廷官署의 官職으로서 官僚的 性格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던 것이 改定田柴科에서는 이런 구별이 없어지고 18科로 나누어진 단일한 科等 基準에 모든 官職이 포함되는 체제로 바뀌었다.⁵⁰⁾ 이와 같은 변화는 곧 始定田柴科에서 文班과 雜業을 구분케 한 兩者의 관료적 성격의 차이가 그간 해소되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改定田柴科의 토대가 된 成宗 14년의 官制 改編에서 朝廷官署와 內廷官署의 一元化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穆宗代를 전후하여 殿中省의 機能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사실도 이같은 이해를 뒷받침한다고 생각한다. 殿中省에 대한 『高麗史』 百官志의 다음 記述에 먼저 주목해 보자.

B-㉑ 宗簿寺는 族屬의 譜牒을 관장한다. 穆宗 때 殿中省에 監, 少監, 丞, 內給事가 있었다.⁵¹⁾

후일 宗正寺·宗簿寺·殿中監 등으로의 개편을 거듭했던 殿中省의 職掌과 初期沿革에 대한 아주 짚막한 기술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해 왔던 殿中省의 실체

49) 李基白, 「貴族의 政治機構의 成立」, 『한국사』 5(국사편찬위원회 1981), 34~38 쪽

50) 『高麗史』 志(32) 食貨(1) 田制 田柴科 78:8b-10b(2:708-9).

51) 『高麗史』 志(30) 百官(1) 宗簿寺 76:35b(2:673).

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穆宗 이전의 沿革이 누락되었을 뿐 아니라, 職掌 또한 ‘宗室譜牒의 管掌’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것이 본래 唐에서는 殿中省이 아닌 宗正寺의 職掌이었음⁵²⁾을 고려하면 조금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관점을 좀 달리하면 이러한 차이는 아주 의미 있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穆宗代를 전후하여 殿中省의 機能과 位相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으리라는 점이다. 우선 위 B-㉠의 기술을 부정하지 않는 한 穆宗 이후의 殿中省 업무는 ‘族屬譜牒의 管掌’이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 실제로도 그러했다고 생각된다. 다음의 두 資料가 이런 이해에 도움을 준다. 먼저

B-㉠ 教旨를 내려 말하기를, “근래 듣건대, 宮院 소속 莊戶들의 徭役이 번거롭고 무거워서 백성들이 살기 어렵다 하니, 殿中省이 사실을 조사해서 구휼토록 하라”고 하였다.⁵³⁾

는 顯宗의 教旨를 통해 殿中省이 宮院의 財政管理에 관여했음을 알 수 있는 바, 百官志에서 말하는 ‘族屬譜牒의 管掌’이 단순한 譜牒의 管리가 아니라 ‘譜牒에 올라 있는 王族들의 생활을 전체적으로 보살피는 일’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같은 사실은

B-㉡ 李公老는…內職으로 들어와 殿中監에 除授되어 崇威府의 典選(典選崇威府)을 맡았는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흐르는 물과 같아 일을 본 지 닷새만에 백성들이 칭찬하고 감복하였다.⁵⁴⁾

고 하는 高宗 때 李公老의 行적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여기에 보이는 崇威府는 이것이 유일한 用例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冊封과 함께 반드시 置府토록 한 妃主府 혹은 王子府⁵⁵⁾의 하나임에 틀림 없다. 따라서 그런 崇威府의 典選을 맡았다는 것은 곧 府의 僚屬들을 선발하는 일이었다고 해석된

52) 『舊唐書』志(24) 職官(3) 宗正寺; 『新唐書』志(38) 百官(3) 宗正寺.

53) 『高麗史』世家 顯宗 20년 9월 乙亥 5:13a(1:112).

54) 『高麗史』列傳(15) 李公老 102:9b(3:249).

55) 『高麗史』志(31) 百官(2) 諸妃主府 77:21b-2a(2:690).

다. 바로 이같은 妃主府·王子府의 僚屬 選拔을 殿中監이 처리했는 바 이는 곧 王族이 거주하는 宮院의 관리와 운영이 殿中省의 주요 직무였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이처럼 穆宗代 이후 殿中省의 주된 機能은 族屬譜牒의 官장, 즉 王族이 사는 宮院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이었다. 이것은 많은 內廷官署를 統領하며 왕 및 왕실과 관계되는 제반 사무를 총괄하던 麗初와는 아주 다른 모습인 바, 그간 殿中省의 機能과 位相이 크게 축소되고 약화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전 같았으면 殿中省의 통솔을 받았을 下級の 署局 官司가 穆宗 이후로는 하나의 독립된 官署로서 殿中省과 나란히 소정의 업무를 추진한 사실도 이같은 이해를 뒷받침한다. 가령,

B-㉔ 期日 前에 都校署에서는 康安殿 층계 앞에 浮階를 설치하고 尙舍局에서는 그 소속원을 인솔하여 康安殿 위에 王幄을 설치하고 그 동편에 便次를 설치하며 前面의 기둥 밖에 짐승 모양이 새겨진 2개의 火爐를 설치한다. 尙衣局에서는 花案을 왕이 앉는 좌우편 기둥 앞에 설치하고 殿中省에서는 燈籠을 浮階의 上下左右에 진열하고 彩山을 殿庭에 설치한다.⁵⁶⁾

는 燃燈儀禮의 준비 절차에서 보듯이 都校署·尙舍局·尙衣局 등이 殿中省과 함께 나름대로의 소임을 독립적으로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⁵⁷⁾ 이들 署局 官司가 殿中省의 지휘를 받고 있지도 않으며, 殿中省 또한 스스로 해야 할 고유한 업무가 있는 것이다. 특히 尙舍·尙衣局은 尙食局 등과 더불어 이른바 6局으로 통칭되던 官司의 하나인데, 始定田柴科 규정에서 尙食局의 前身인 尙膳院이 殿中省의 統轄을 받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위상인 것이다.

署局이 다른 官司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公文을 주고 받았다는 것도 이러한 이해에 도움을 준다. 즉,

B-㉕ 七寺·三監이 諸署局에 公牒을 보낼 때는 丞과 注簿가 姓을 쓰고 手決을 하며, 諸署局이 七寺·三監에 公牒을 보낼 때는 直長 이상이 姓名을

56) 『高麗史』 志(23) 禮(11) 嘉禮雜儀 上元燃燈會儀 69:1ab(2:505).

57) 이 燃燈會 規式이 어느 시기의 儀禮을 전하는 것인지는 물론 분명치 않다. 그러나 規式에 이어 顯宗 元年의 燃燈會 復活 사실을 摘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대략 이 무렵부터일 것으로 추정된다.

쓴다. 諸下署局이 三省·諸曹·式目·七寺·三監에 公牒을 보낼 때는 直長 이하의 官원이 職位와 姓名을 함께 쓴다. 吏部와 臺省이…諸署局에 公牒을 보낼 때는 錄事와 注書가 手決만 하고, 諸署局이 三省에 公牒을 보낼 때는 直長 이상이 職銜과 姓名을 함께 쓴다.⁵⁸⁾

에서 보듯이 下級 官司인 署局⁵⁹⁾이 中級の 寺監은 물론 심지어 三省에 대해서까지 독자적으로 公牒을 受發할 수 있었는 바, 이는 곧 穆宗代 이후⁶⁰⁾ 尙食局과 같은 署局 官司가 殿中省의 통솔로부터 벗어났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高麗史』百官志의 編制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준다. 즉 編制上 穆宗代 이후의 署局 官司와 殿中省의 關係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가령 始定田柴科 규정에 보이는 官사의 경우만 해도 殿中省이 百官志 ①에 실려 있음에 반해, 延壽·尙膳院의 後身으로 이해되는 尙藥局과 尙食局은 百官志 ②로 분리, 수록되어 있다.⁶¹⁾ 물론 이를 百官志 編者의 杜撰이라거나, ‘官司의 位格에 따라 배열한다’는 편찬 원칙 내지 체제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결과로 보고 兩者의 離隔 사실이 곧 상호간의 無關性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百官志의 구성을 좀더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이러한 해석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보아 『高麗史』百官志에서의 官司 배열은 그 位格 순으로 되어 있다. 三省 다음에 6部, 그리고 中級 官司인 寺監, 下級の 署局 순으로 배열되어 있

58) 『高麗史』志(38) 刑法(1) 公牒相通式 京官 84:11ab(2:838).

59) B-㉔에 나오는 ‘諸署局’과 ‘諸下署局’은 이어지는 설명으로 보아 그 실체가 조금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前者는 直長級の 官원이 있는 5局 및 京市署·大廟署·諸陵署 등을 말하며, 後者는 最高位職이 直長보다 낮은 餘他의 署局을 가리킨다고 본다.

60) 無編年 記事인 관계로 B-㉔의 規式이 어느 때 제정된 것인지는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規式의 내용 중에 尙書都省·吏部 등의 官府名이 보이는 점으로 보아 일단 成宗 14年 이후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 해에 기존의 御事都省을 尙書都省으로, 選官을 吏部로 개칭한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도 六部 및 그 屬司에 대한 초기(成宗 元年~14年) 명칭인 ‘六官諸曹’가 여전히 쓰이고 있음을 볼 때 成宗 14年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였다고 생각된다. 공식적인 官名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습관적으로 舊名을 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아울러 顯宗2年에 六部の 屬司가 대대적으로 혁파되었음(邊太燮, 『高麗時代 中央政治機構의 行政體系』, 『高麗政治制度史研究』, 1971)을 감안하면 대략 成宗 14年 이후 顯宗 2年에 이르는 시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61) 司天의 후신이라 할 太卜監은 殿中省과 함께 百官志 ①에 수록되어 있으나, 이 또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關係性을 추정하기 어렵다.

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屬司와 같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는 그 위격이 낮더라도 상급 관사의 바로 뒤에 연이어 배치하였다. 吏部の 屬司인 考功司와 刑部の 屬司인 都官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唐·宋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唐이나 宋에서는 6부와 屬司 뿐 아니라 領屬 關係에 있는 寺監과 署局 官司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서술 체계를 따르고 있다. 일례로 6局的 경우 殿中省 조항에서 이의 統領을 받는다거나 屬司라는 점을 밝힌 뒤 각각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⁶²⁾

따라서 『高麗史』 百官志에서 6局을 비롯한 署局 官司와 殿中省 등의 寺監 官司를 전혀 격리시켜 설명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6부와 屬司 그리고 唐·宋의 경우와는 달리 兩者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았음⁶³⁾을 반영한 결과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殿中省을 비롯한 寺監 官司 조항에 署局的 統領 사실이 언급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기록의 부실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결국 職務의 輕重에 따라 官司의 位格을 달리하기는 했지만, 官司마다 고유한 직무를 가지고 있을 뿐 유사한 官司別로 領屬 關係를 이루고 있지 않았다고 정리할 수 있는 바, 이는 麗初와는 아주 다른 모습이라 하겠다.⁶⁴⁾

이로써 殿中省의 統轄 하에 有機的으로 움직이던 麗初의 여러 內廷官署가 成宗 14년의 官制 改編으로 각각 朝廷官署로 독립하고, 그에 따라 殿中省의 位相과 機能 또한 크게 약화되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될 줄로 믿는다. 그런데 이러한 內廷官署의 朝廷官制화가 이 때의 개편으로 일거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 얼마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6局的 하나인 尙藥局의 경우에서 이같은 변화의 실례를 찾을 수 있다. 즉,

62) 『舊唐書』 志(24) 職官(3) 殿中省; 『新唐書』 志(37) 百官(2) 殿中省; 『大唐六典』 殿中省

63) 비록 적극적인 論證을 하지는 않았지만, 朴宰佑 또한 『高麗史』 百官志의 구성에서 6局과 殿中省의 예속 관계는 찾을 수 없다고 이해하였다. 朴宰佑, 「고려전기 政策提案의 주체와 提案過程」, 『震檀學報』, 88(1999).

64) 본래 唐에서는 宗正寺의 업무였던 ‘族屬譜牒의 官장’을 殿中省의 직무로 규정한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고 본다. 즉 成宗 14년의 官制改編에 따라 그간 殿中省의 統轄을 받던 여러 署局이 朝廷官署로 독립하면서 기능을 상실한 殿中省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했으나, 宗正寺를 새로 설치하지 않는 대신 殿中省으로 하여금 이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다는 이해이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始定田柴科 규정을 통해 그 존재를 분명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百官志 編者が 殿中省의 沿革을 穆宗 이후부터 기술한 것은 바로 이같은 ‘族屬譜牒의 官장’이라는 고유한 직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B-④ 敎書를 내려 말하기를 “ 듣자니 朝野의 士庶人으로서 병든 자들이 醫員을 보지 못하고 또 藥조차 없어서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내 이들에게 일일이 醫藥을 주려는 생각은 간절하나 옛날에도 모든 사람에게 모조리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은 없었다. 지금부터 중앙과 지방의 文官 5品, 武官 4品 이상의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 官司에서 자세히 적어 보고하면 侍御醫와 尙藥直長·大醫·醫正 등으로 하여금 藥을 가지고 가서 치료토록 할 것이다”고 하자, 群臣이 表를 올려 감사를 표시하였다.⁶⁵⁾

는 成宗 8年의 敎書를 통해 이전의 尙醫·延壽를 개편한 尙藥局의 존재와 함께 이의 직무가 王 및 王室에 국한하지 않고 朝廷이나 朝官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尙藥局을 좀더 公的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바, 尙藥局이 더 이상 內廷官署로서의 지위에만 머물러 있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中樞院의 설치 또한 이같은 변화를 보여 주는 사례의 하나라 하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中樞院은 成宗 10년에 宋에 使臣으로 다녀온 韓彦恭의 奏請으로 이전의 直宿員吏를 묶어 새롭게 편제한 朝廷官署였다.⁶⁶⁾ 그런데 앞서도 논의했듯이 麗初에 直省官과 같은 直宿 官員은 殿中省 소속이었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中樞院의 설치는 곧 直宿 機能을 상실한 殿中省의 위상 약화 뿐 아니라 당시까지 內廷官署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直宿 機能이 公的 영역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본다.

成宗 연간, 특히 14년에 있는 이와 같은 官制 改編이 곧 앞서 언급한 內侍制 變化의 중요한 轉機였다고 이해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內廷官署가 朝廷官署로 변모하고 殿中省의 機能 또한 변질되면서 王은 國政, 특히 王室 運營에 있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고 본다. 殿中省을 통한 一元的인 王室 運營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고, 전보다는 좀더 복잡한 公的인 절차를 거쳐야만 했던 것이다. 이에 王과 朝廷官署를 중간에서 매개하며 王 및 王室에

65) 『高麗史』 世家 成宗 8년 2월 庚辰 3:15b(1:73).

66) 『高麗史』 志(30) 百官(1) 密直司 76:10b(2:660).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穆宗代를 前後하여 마침내 高麗式 朝官內侍制의 시행과 함께 內侍省을 설치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렇게 볼 때 派遣職의 朝官內侍를 특징으로 하는 高麗式 內侍制의 시행과 事務機構인 內侍省의 出現은 결국 國政, 특히 王室 運營의 公共성을 점차 높여 가는 역사적 과정의 한 產物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內廷官制의 朝廷官制化는 곧 國政 및 王室 運營의 合理性과 公共성을 한층 제고시키는 조치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高麗 內侍의 실체가 中國의 唐·宋이나 朝鮮의 그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구명하기 위해 高麗의 內侍制가 성립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살펴 보았는 바,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國初 高麗의 中央 官制는 新羅 때와 마찬가지로 일반 國家庶政을 담당하는 朝廷官制와 왕 및 왕실의 업무를 전담하는 內廷官制로 二元化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른바 始定田柴科 규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文班’과 ‘武班’이 前者와 관계된 것이라면 ‘雜業’으로 분류된 ‘殿中·司天·延壽·尙膳院 等’의 실체는 後者라 하겠는 바, 이들 內廷官署는 新羅에서와 같이 殿中省 즉 內省의 統領 하에 有機적으로 기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러한 內廷官署의 官員이 麗初의 內侍였다고 이해된다. 內侍書記가 內省의 書記로 해석되고, 御廚를 맡은 尙膳院의 司膳을 近臣(內侍)이라 하며, 內廷官署의 一員인 掖庭院의 內謁者監을 內侍謁者로 표기한 사실 등이 이같은 이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麗初의 內侍制는 內省을 頂點으로 하는 內廷官制에 다름 아니며 後代의 內侍院과 같은 內侍의 事務機構는 있을 필요조차 없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들 麗初의 內侍는 專任職이었다. 이점은 後代의 內侍, 특히 朝官內侍가 朝廷의各司에서 闕內的 內侍院으로 파견된 派遣職이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그렇지만 이들 內侍와 朝官 사이의 人事交流는 꽤 활발했다고 본다. 交流

에 별다른 장벽이나 차별은 없었고, 그래서 內侍를 지낸 인물이 후일 門下侍中과 같은 朝廷의 高位職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麗初의 內侍制는 穆宗代 이후 이른바 高麗式 朝官內侍制로 크게 바뀌었다. 成宗 연간에 진행된 일련의 官制 整備 그 중에서도 14 년의 官制 改編으로 朝廷官制와 內廷官制로 二元化되어 있던 麗初의 中央 官制가 朝廷官制로 一元化된 것이 그 계기였다. 즉 기존의 內廷官署가 朝廷官署로 변모하고 그간 이를 統領하던 殿中省의 位相과 機能 또한 크게 약화·변질됨에 따라 새로이 王과 朝廷官署를 중간에서 매개하며 王 및 王室에 관한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마침내 中國의 唐·宋 및 朝鮮의 宦官 內侍와는 다른 高麗式 朝官內侍制가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보면 결국 派遣職의 朝官內侍를 특징으로 하는 高麗式 內侍制와 그 事務機構인 內侍省은 國政, 특히 王室 運營의 公共性을 점차 제고시켜 가는 歷史的 過程에서 출현한 產物의 하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內廷官制의 朝廷官制化는 곧 國政 및 王室 運營의 合理性과 公共性을 한층 끌어올리는 조치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高麗史節要』, 『高麗史』, 『三國史記』, 『舊唐書』, 『新唐書』, 『大唐六典』
 朝鮮總督府(編), 『朝鮮金石總覽』.
- 姜愛子, 「高麗時代의 內侍에 對하여」. 梨花女大碩士學位論文, 1965.
- 姜晉哲, 『高麗土地制度史研究』. 서울: 高麗大出版部, 1981.
- 金甲童, 『羅末麗初의 豪族과 社會變動 研究』. 서울: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90.
- 金洛珍, 「牽龍軍과 武臣亂」. 『高麗武人政權研究』. 서울: 서강대출판부, 1995, 10~53쪽.
- 김보광, 「高麗前期 內侍의 構成과 役割」. 『한국사학보』 13, 2002, 105~133 쪽
- 金載名, 「전시과 제도」. 『한국사(14)』. 과천: 國史編纂委員會, 1993, 21~96쪽.
- 金載名, 「高麗 前-中期의 財政運營과 內侍」. 『歷史와 社會』 24, 국제문화학회 2000, 95~125 쪽
- 金載名, 「高麗時代의 內侍」. 『歷史教育』 81, 2002a, 81~109 쪽
- 金載名, 「高麗時代의 朝官內侍」. 『정신문화연구』 25 권 3 호, 2002b, 61~87 쪽

金載名, 「高麗 內侍制 運營의 一面」. 『清溪史學』 18, 2003a, 95~114 쪽

金載名, 「高麗의 執奏制」. 『史學研究』 72, 2003b, 1~32 쪽

金載名, 「高麗後期 內侍制의 變化」. 『정신문화연구』 26 권 4 호, 2003c, 3~26 쪽

金昌洙, 「麗代 內侍의 身分」. 『東國史學』 11, 1969, 127~140 쪽

朴宰佑, 「고려전기 政策提案의 주체와 提案過程」. 『震檀學報』 88, 1999, 61~85 쪽

朴漢男, 「高麗內侍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碩士學位論文, 1982.

朴漢男, 「高麗內侍와 門閥貴族의 形成關係」. 『首善論集』 8, 1984, 139~161 쪽

朴孝信, 「高麗時代의 內侍」. 『駿台史學』 19, 1966, 23~47 쪽

邊太燮, 「高麗時代 中央政治機構의 行政體系」. 『高麗政治制度史研究』 서울 一潮閣 1971, 2~35 쪽

申虎澈, 「高麗 光宗代의 公服制定」. 『高麗光宗研究』 서울 一潮閣 1981, 75~91 쪽

李基白, 「貴族的 政治機構의 成立」. 『한국사(5)』. 과찬 國사편찬위원회, 1981, 15~48 쪽

이정훈, 「高麗前期 各司의 설치와 운영방식의 변화」. 『韓國史研究』 128, 2005, 31~69 쪽

최규성, 「고려 남반직의 성격 변화에 대한 연구」. 『史學研究』 58 · 59 합, 1999, 633~656 쪽

崔震植, 「高麗前期 內侍와 王權과의 關係」. 『東義史學』 4, 1988, 23~52 쪽

三池賢一, 「新羅內廷官制考」(上). 『朝鮮學報』 61, 1971, 1~44 쪽

三池賢一, 「新羅內廷官制考」(下). 『朝鮮學報』 62, 1972, 21~64 쪽.

周藤吉之, 「高麗初期의 內侍 · 茶房과 明宗朝以後의 武臣政權との關係」. 『東方學』 55, 1977.

矢木毅, 「高麗時代의 內侍와 內僚」. 『朝鮮學報』 184, 2002, 43~76 쪽

국문 요약

成宗 14년 이전까지 고려의 중앙 관제는 庶政을 담당하는 朝廷官制와 왕실 업무를 전담하는 內廷官制로 二元化되어 있었다. 이것은 始定田柴科 규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文班과 武班이 전자와 관계된 것이라면 雜業으로 분류된 ‘殿中 · 司天 · 延壽 · 尙膳院 等’의 실체는 후자라 하겠다. 이들 내정 관서는 殿中省, 즉 內省의 통령 아래 유기적으로 기능하였다. 바로 이러한 내정관서의 관원이 麗初의 內侍였다. 따라서 여초의 內侍制는 內省을 정점으로 하는 내정관제에 다름 아니며, 후대의 內侍院과 같은 내시의 사무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러한 여초의 內侍制는 穆宗代 이후 이른바 高麗式 朝官內侍制로

크게 바뀌었다. 그간 이원화되어 있던 여초의 중앙 관제가 성종 14년의 관제 개편으로 조정관제로 일원화된 것이 그 계기였다. 기존의 내정관서가 조정관서로 변모하고 그동안 이를 통령하던 殿中省의 위상과 기능 또한 크게 약화·변질됨에 따라 새로이 왕과 조정관서를 중간에서 매개하며 왕실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고, 마침내 중국이나 朝鮮의 宦官內侍와는 다른 고려식 조관내시제가 등장한 것이다.

● 투고일 : 2006. 3. 20.

● 심사완료일 : 2006. 5. 29.

● 주제어 (keyword) : 內侍(*Naesi*), 內侍制(*Naesi system*), 內廷官制(*royal organization*), 朝廷官制(*public organization*), 殿中省(*Jönjoongsöng*), 內省(*Naesöng*)